『외화서비스 하나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 (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해외송금 자동이체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외화보통예금 또는 외화MMDA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4조 입금 가능통화 이 예금의 입금 가능통화는 27개 통화로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로 합니다.

제5조 이자지급 이 예금의 예금과목별 이자지급방법을 따릅니다.

제6조 해외송금 자동이체서비스
①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송금사유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② 해외송금 자동이체서비스의 1회 송금금액은 USD환산 최저 500불 이상 ~ 최고 5,000불 이하로 지정이가능하며, 매월 지정한 날짜(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약정한 금액을 해외송금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정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합니다.
③ 거래외국환은행 지정거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이 예금의 지급정지, 송금한도 초과 등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송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중지하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금사유	송금한도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연간 USD 50,000
유학생/해외체재비 송금	금액제한없음 [다만, 대외지급실적합계(송금액, 휴대반출액, 신용카드등) 가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통화]
외국인 국내보수 송금	소득증빙서류미제출시: 연간 USD50,000(제출시: 연간소득금액 + USD50,000)

제7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 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까지 감면 합니다.

제8조 환율 우대서비스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타인명의계좌 제외)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고 40%, 기타통화는 최고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통화 : GBP, CAD, CHF, HKD, SGD, AUD, NZD, THB, NOK, SEK, DKK)

제9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 부칙 >
이 특약은 2017년 1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이 특약 변경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에게도 적용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16-약관-622호 (2016.11.24)

KEB 하나은행